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UC사랑회로 영문으로는 love UC(이하"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UC(궤양성대장염) 환우 및 가족들의 모임으로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본 UC사랑회는 궤양성대장염 환우들의 모임으로 환자와 환자가족 등 염증성장질환 환자들의 권익신장과 친목을 도모하며, 치료 정보 공유와 환자의 재활과 사회로의 복귀 등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사회적 편견에 대해 제도적 도움을 이끌어 환우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궤양성대장염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염증성장질환 환우들을 대변한다.

제3조 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대내외 세미나, 정기모임 행사 주관
2. 염증성장질환에 관한 정보 교류
3. 희귀난치성 연합회의 대표적 창구 역할
4.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임원 및 정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은 병원으로부터 확진 받은 궤양성대장염 환우와 가족 및 질환 관련된 의료인에 한하여 정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정회원 가입요건은 정회원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두 가지 요건에 동의하여 결정된다.

- 1) UC사랑회에서 환우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 동참과 협력이 가능한 자.
- 2) 이메일 또는 문자수신이 가능한자.

임원은 정회원 중 UC사랑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를 거쳐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 회원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본회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공평한 수혜자의 권리를 가지며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3. 환우회에 봉사하고 기여한 임원은 임원직 퇴임 후에도 특별회원으로 예후 등급을 유지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박탈

1. 본회의 회원은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지위와 위상에 걸 맞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에 상반된 행위 등으로 인해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협의회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경고 조치 후 상실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UC사랑회 대표회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회원 간 욕설, 비방 등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
- 2) 치료효과가 불분명한 민간요법을 유포하여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
- 3) 건강보조식품 등 불법판매행위를 하는 자.
- 4) 기타 UC사랑회 운영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회원.

제7조 의료상담

본회에서 회원들에게 의료상담을 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의료인은 반드시 본회의 임원단에 신분을 공개하고 본회 임원단의 승인하에 의료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 의사결정

본회는 최고의결은 정기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정기총회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임원단의 결정에 의해 본회의 상황 등에 따라 개최를 고려할 수 있음)

제9조 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기부금, 기업체의 후원금등으로 충당한다.

제2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이름: 이민지

2) 부회장 2인

이름: 남우

이름: 김승희

3) 총무 2인

이름: 이남희

이름: 박경희

4) 회계 1인

이름: 황진우

5) 감사 1인

6) 고문 1인

이름: 조정일

2. 임원은 환우들의 모임 활성화 및 회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단체장을 선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그룹채팅 등)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를 통하여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원선출의 투표권은 환우회 가입 후 1년 이상 된 자, 임원출마 자격은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에 2회 이상 참여한 자에 한함

제12조 임원의 임기 등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회의 지속성을 위해 중임할 수 있다. 단, 재임시 임원의 과반 이상 찬성시 재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가능한 빨리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정기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회장이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홈페이지 게시판관리, 우편발송등 전반적인 행정직무를 대행한다.

4. 회계와 감사는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한다.

5. 별도의 단체장들은 각 소속회원관리와 모임에 관한 업무를 기본적으로 총괄하며, 중요한 업무는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대행해야한다.

제3장 정기총회

제14조 정기총회의 구성

본회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제15조 정기총회의 의결 사항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 정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수의 정회원이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2. 정기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는 장날행사를 기준으로 정한다.

제17조 정기총회의 의결

정기총회의 의결은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본회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다만 환우 본인의 입원 등 불가결한 요소가 인정 될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은 회원이 지정한 회원에게만 대리인 자격이 인정되며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인정 한다.

제19조 재정

1. 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총회 및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및 임원회의 일로부터 차기연도 총회 및 임원회의 일까지로 한다.

3. 감사보고

감사는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의 시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조사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임원회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예의를 표하고 회원은 두루 상조한다.

제4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21조 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이상의 찬성 시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회원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의결한다.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때는 정산 후 잔여재산은 UC사랑회에서 지정하는 단체에 귀속한다.

제5장 온라인

제24조 온라인 회원규정

1. 정회원 가입 후 12개월 이상 환우회 홈페이지에 방문이 없을시 자동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2. 환우회에 권익에 위배되는 자는 강제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3. 환우회 가입의 목적성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가입하려는 자는 가입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4. 가입시 규정에 동의하고 권익에 동의하는 회원만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5. 잘못된 정보를 회원들에게 유포시키는 자, 온라인 상에서 회원들간 글로 비방하려는 자는 강제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소모임

1. UC사랑회는 소모임(이하 단체)을 운영할 수 있다.
2. 단체는 임원단의 동의로 운영된다.
3. 단체는 정회원 및 가족 지인등과 함께하여 만들어 갈 수 있다
4. 단체의 특성이 본회에 위해가 되거나 목적성이 다른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거부할 수 있다.
5. 사랑회에 허가된 단체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UC사랑회 협력단체

본회는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질환관련 단체(동우회, 밴드 등)들과 협력하여 본회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업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27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8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2008년 6월 25일 제25조 개정

2010년 10월 25일 제6조 개정

2011년 8월 28일 제11조 개정 제12조 보완

2014년 9월 1일 변경 - 'UC사랑회'의 명칭이 '한국염증성장질환협의회'로 변경되었으므로 <제1조> 명칭, 제<2조> 명칭 변경

2014년 12월 20일 제5조 보완

2015년 1월 17일 제27조 보완

2019년 정관 개정 - '한국염증성장질환협의회'에서 'UC사랑회'로 변경, 임원진 구성 변경, 환후회비 조항 삭제

2022년 11월 5일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4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개정